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3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서범수・최수진・구자근

김 건 • 윤영석 • 엄태영

박성민 · 김소희 · 장동혁

김위상 · 조승환 · 이인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 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을 "건설 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를 "등록번호표가"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부착·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⑧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⑧ (생 략) (현행과 같음) 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 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 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 기할 수 있다. ① · ① (생 략) ① ·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압류등록)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 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 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u>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u> 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 표를 <u>부착 및 봉인</u>하고, 등록번 호를 새겨야 한다.

-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u>등록번</u> 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u>부착 및 봉인</u>을 신청하여야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u>부착 및 봉인</u>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 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u>3. 「공공기관의</u>	<u> 운영에</u>	<u> </u>
법률」 제4조에	따른 궁	공공기
관으로부터 압류	등록의	촉탁
이 있는 경우		
제8조(등록의 표식 등	5) ① -	
<u>부착</u>		
②	<u>-</u>	등록번
<u>호표가</u>		
	<u> 부착</u>	
,		
③		
<u>부착</u>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	

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 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 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2. (생략)
-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 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 는 경우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 〈삭 제〉 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
- 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 비 범위: 2016년 1월 1일

	- <u>등</u> 록번호
표를	
1.・2. (현행과 같음)	
3	
<u></u> 부착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표를 부착하지 <u>아니하거</u> 나 봉인하지 아니한</u> 건설기계 를 운행한 자
- 1의2. ~ 4.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표를 <u>부착·봉인</u>하지 아 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2의2. ~ 8. (생략)
- ③ ④ (생 략)

세44조(과태료) ①
1
<u>아니한</u>
1의2. ~ 4.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2 <u>부착</u>
2의2.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